

## 자동차 보험 유형별 보상사례

— 손해배상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 —

김희중

(한국자동차보험(주) 자동차보상부 차장)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제3자가 부상하거나 사망한 경우, 그 제3자는 손해 배상 청구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의 손해는 단적으로 말해서 사고 이후 이익 상태의 차이, 즉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생긴 현재의 상태와 사고가 없었더라면 있었을 가상 상태의 차이라 할 수 있다.

자동차 사고로 인한 인적 손해는 통상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위자료)로 구분한다.

재산적 손해는 다시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로 구분한다. 위자료는 피해자측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평가한 것이며, 적극적 손해는 치료비, 장례비 등과 같이 피해자가 자기 호주머니에서 직접 지출하는 금전적 손해이나, 소극적 손해는 사고가 없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을 이익을 평가하는 것으로 이 중에서 가장 흔히 생기는 손해는 장래에 얻을 수 있었을 수입의 상실 즉 상실 수익(일실이익이라고도 한다)이라 할 수 있다. 만일 회사에 다니면서 월급을 받고 있던 회사원이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였을 경우, 그 피해자는 사고가 없었다면 퇴직시까지 매월 받게 될 월급을 받지 못하게 되므로, 그 월급에서 본인이 매월 지출하게 되는 생활비를 공제한 금액

을 기준으로 하여 중간이자(향후 매월 받게 될 월급을 미리 받게 되는 결과이므로 이자 해당액을 공제함)를 공제하여 상실 수익을 산정하게 된다.

이를 간단한 산식으로 나타내면,

- 사망의 경우

(월수입 — 생활비) × 취업 가능 기간에 해당하는 라이브니쓰 계수 혹은 호프만 계수

- 후유장해의 경우

월수입 × 노동 능력 상실률 × 노동 능력 상실 기간에 해당하는 라이브니쓰 계수 혹은 호프만 계수

위의 산식에서 알 수 있듯이 사망의 경우나 후유장해에 공통적으로 피해자의 월수입의 많고 적음에 따라 상실 수익액이 결정된다. 피해자의 월수입은 급여 소득자의 경우와 같이 과악하기가 용이하고 납세 자료 등에 의하면 쉽게 증명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입증된 월수입을 기준으로 상실 수익을 산정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그러나 가정 주부, 사고 당시 무직자, 실제 소득은 있으나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없는 경우와 같이 월수입의 과악이나 증명이 곤란한 경우도 상당히 많으며, 이와 같은 경우에는 통상 공신력 있는 통계 자료에 의한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상실 수익을 산정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상실 수익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피해자의 근로(노동능력)의 대가로 얻어지는 소득에 한정되는 것이며, 임대 소득, 이자 소득, 배당 소득 등은 피해자의 노동 능력과는 무관하게 유지되므로 상실 수익 산정의 기초인 소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상실 수익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위법소득이어서는 안되고 장래 영속성이 있는 소득이어야 한다. 이는 상실 수익이 피해자의 취업 가능 기간까지 장기간 동안 소득의 상실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사례 I〉

피해자는 22세된 위안부로서 매월 일정 금액의 순수입을 얻고 있으며, 향후 35세까지 12년 6개월 동안 상실 수익을 청구한 경우.

위안부라 함은 매춘 행위를 하는 여자를 지칭하는 것이며, 결국 피해자는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매춘 행위를 35세까지 계속해서 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범법 행위로 얻는 수입을 기초로한 상실 수익의 수입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사례 II〉

피해자는 중기 조종 면허는 없으나, 다년간 회사에서 중기

조종을 하였고, 회사에서도 이를 묵인하고 고용하여 매월 일정 금액의 월급을 지급한 경우로서, 피해자는 55세까지 중기 조종사로서 월수입을 기준으로 상실 수익을 청구한 경우.

중기를 조종하고자 하는 자는 중기관리법에 의하여 중기 조종사 면허 시험에 합격하여 그 면허를 취득하여야 하며, 면허없이 중기를 조종한 경우에는 처벌받게 되어 있는 등 무면허 중기 조종은 법이 이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위법한 행위에 의하여 얻는 수입을 기준으로 상실 수익을 산정할 수 없다.

#### 〈사례 Ⅲ〉

피해자는 사고 당시 차량 정비 공장에서 근무하면서 월급여를 받고 있었는데, 정비사등 국가에서 공인하는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피해자는 관계 법규에서 정한 그 직종의 면허 소지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법규상 그 취업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피해자가 사고 당시 지급받고 있는 월수입은 위법 수입이 아니므로, 이를 기준으로 상실 수익을 산정할 수 있다.

#### 〈사례 Ⅳ〉

피해자는 사고 당시 경북 ○○군에 사과나무 436주가 식재된 과수원을 소유하고 있으나 본인이 다른 사업으로 바빠서 이를 직접 경영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 일정한 임대료만 받고 있는 경우.

피해자가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였다하더라도 임대료 수입은 사망 전과 마찬가지로 계속 얻을 수 있



는 것이며, 따라서 위 임대료 수입은 피해자의 노무에 의한 수입이 아니므로 상실 수익 산정의 기초로 할 수 없다. 다만,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피해자가 건물 관리를 위하여 피해자의 노무가 직접 제공되고 있는 경우에는 비록 건물 소유자로서 임대료를 받고 있더라도 그 임대료는 피해자의 노동력이 투하된 것이므로, 그 기여도 만큼의 수입은 상실 수익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

#### 〈사례 Ⅴ〉

피해자는 자동차 사고로 사망 당시 ○○토건회사의 현장 총무직에 고용되어 작업 현장을

파악하고 인부들에게 노임을 집금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면서 월급여를 지급받고 있었는데, 이번 사고 후에 ○○토건회사가 도산되어 폐업한 경우.

피해자의 상실 수익은 장래의 수입의 상실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실제로 피해자가 근무하여 월급여를 받고 있던 회사가 도산하여 폐업하였다면, 피해자가 사고 당시 받고 있던 월급여를 기준으로 상실 수익을 인정할 수 없고, 피해자의 전문 기술, 연령, 경력 등을 감안한 통계 소득을 기준으로 상실 수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